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 등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 조직 명칭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으로 변경되어 소관 지침(시험연구비 집행지침 등 5개)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

조번호	행정규칙 명	개정 내용
제1조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 문화재→국가유산, 문화유산 등 - 문화재청→국가유산청 - 국립문화재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
제2조	국립문화재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	
제3조	국립문화재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	국립문화재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제5조	국립문화재연구원 약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다. 오탈자 및 어려운 용어 등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립문화유산연구원지침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등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원 지침 5개 일괄개정안

국립문화재연구원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등 5개 국립문화재연구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시험연구비 집행지침」의 개정)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이”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로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0조”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0조”로 한다.

제2조(「국립문화재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문화재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 행정운영과”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으로, “행정운영과장”을 “디지털문화유

산연구정보팀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국립문화재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의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문화재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국립문화재연구원 관사관리규정」의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원 관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문화재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소 및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본원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로 한다.

별표 1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국립문화재연구원 근무기간, 문화재청 근무기간”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근무기간, 국가유산청 근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표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 배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근무기간	국가유산청 근무기간	주민등록지 직선거리 (주민등록지↔연구소)	비고

별표 1 기호(-) 및 제3항 중 “문화재연구원”을 각각 “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기호(-) 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연구원”을 “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립문화재연구원 직원관사”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직원관사”로, 같은 서식 중 “「국립문화재연구원 관사 관리규정」”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5조(「국립문화재연구원 약품 및 폐기 관리물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원 약품 및 폐기 관리물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문화재연구원 약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약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 <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적용대상 :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집행하는 시험연구비(210-13) ○ 재정집행 성과 평가 : 「국립문화재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0조 등에 따라 시험연구비 집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집행실적에 따라 차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음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0조 ---------- ---------- ----------

국립문화재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립문화재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재연구원 자료정보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발간자료”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자료정보관은 국립문화재연구원 행정운영과 소속으로 하며, 자료정보관장은 행정운영과장이 된다. ② (생 략)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 ----------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발간자료)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소속기관에서	제6조(발간자료)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발간되는 모든 자료는 3부 이상 자료정보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기증 및 교환) ① 유관기관이나 학술단체에 자료의 기증을 요청하여 문화재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제7조(기증 및 교환) ① ------- 국가유산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수집자료의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원 각 실·과의 공무국외출장 및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수집 자료는 30일 이내에 자료정보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집자료의 이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제14조(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료를 열람하고 자료정보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열람) ① ----------.
1.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	1.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국립문화재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립문화재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4조(사업의 선정 및 관리) 연구원의 수탁사업 선정 및 사업관리는 국립문화재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연구원 훈령)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선정 및 관리)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국립문화재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립문화재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본원 및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근무자 중 대전지역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용 관사 입주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관사 관리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 ---------- ---------- ---------- ---------- ---------- ---------- ---.
제2조(관리운용) ① 국립문화재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목적으로 대전지역에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관사“라 한다)의 관리운용은 행정운영과장이 관장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입주자 신청 및 선정) (생	제4조(입주자 신청 및 선정) (현행

략) ① 행정운영과장은 관사의 공실 또는 입주 만료자가 발생시에 본소 및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한 후 입주 희망신청을 받는다. ② ~ ⑤ (생 략)	과 같음) ① ---------- ---------- 본원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 ----------. ② ~ ⑤ (현행과 같음)

국립문화재연구원 약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립문화재연구원 약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약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약품 및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적정하게 관리·처리함으로써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2조(적용범위)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